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76

발의연월일: 2020. 12. 21.

발 의 자: 백종헌・김은혜・정운천

박완수 · 서정숙 · 서일준

이헌승 · 김기현 · 정찬민

유경준 · 최춘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마련하여"를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생 략)	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②
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u>마</u>	<u>ਸ</u> }
<u>련하여</u>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	런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
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u>.</u>